

자원의 사회적 재전유에 관하여*

On the Social Reappropriation of Nature

엔리케 레프(Enrique Leff)**

UNEP 중남미 지역담당관

허남혁 옮김(사단법인 대구경북환경연구소 사무국장)

1. 환경비용과 자연의 가치

경제적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적 조건을 파괴시킴으로써 자연을 생산과정에서부터 외부화시켰다. 환경파괴를 통제하고 이를 역전시킬 필요성으로 인해 이제 자연의 가치와 잠재력의 내부화가 요청되고 있다.

환경경제학(자연자원과 오염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은 경제체제가 자연 자원과 환경적 서비스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시장가격을 확립함으로써 생태비용과 미래세대의 선호를 내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자연을 경제적 영역에 다시금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보전과 복원 비용을 표준적 가치척도로서 시장가격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평가는 경제순환과 동조적이거나 서로 같

* 이 글은 Leff, E., "On the Social Reappropriation of Nature,"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0(3), 1999를 번역한 것이다.

** 레프는 *Green Production: Toward an Environmental Rationality*, 1995, London: Guilford Press의 저자이기도 하다.

은 기준으로 잴 수 없는, 재생과 생산성의 시공간적인 생태적 조건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의미 또한 자연의 채취와 변환 형태와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경제과정-상징적 관계와 권력관계-을 통해 구체적인 자연의 전유양식을 결정하는 가치와 행동을 좌우하며, 이는 시장가격으로 전환되거나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비용과 조건의 내부화는 자연의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그 윤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평가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속에는 자연의 '실체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생태적·기술적 도구도 없다. 다양한 환경가치들을 표준적 측정단위로 환원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한 경고로서, 윌리엄 카프는 경제적·에너지적·환경적 합리성의 비교평가에 이질적인 물리적 과정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언급했다.¹⁾ 게다가 경제학은 객관적인 가치이론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있다.²⁾ 환경비용과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평가는 더이상 양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문화적 인식, 공동체의 권리, 사회적 이해관계 등과 같이 시장 바깥에 확립되어 있는 질적인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주의는 자연을 재평가하며, 이는 자원과 환경비용 가격의 증가로서 경제 속에 반영된다. 환경운동은 자연의 자본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통해 생태적 비용을 경제체제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조건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은 자연의 사회적 재전유(social reappropriation of nature)에 명백한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문화적 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환경주의는 생산기반(자본, 노동, 기술)을 경제적 중심지에서 그 생태적·문화적 조건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보다 탈집중화된 발전과정을 창출하고

1) William Kapp, "Social Costs in Economic Development," in J. E. Ullmann(ed.), *Social Costs,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Lanham, MA: University of America, 1983.

2) Enrique Leff, "La Teoría del Valor en Marx Frente a la Revolución Científico-Tecnológica," in Enrique Leff(ed.), *Teoría del Valor*, Mexico: UNAM, 1980; Elmar Altvater, *The Future of the Market*, New York, Verso, 1993.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보전과 개발을 양립시키는 임무를 넘어서며,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생태적 조건을 내부화하는 비현실적인 목적을 넘어서는다. 환경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연과 문화를 생산력으로서 바탕을 두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대안적 발전을 위한 잠재력으로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준다.³⁾ 자연은 생산수단, 즉 권력관계에 의해 교차(crossed over)되는 사회적 재전유의 대상이 된다.⁴⁾

따라서 생태적·공동체적 생산조건은 새로운 생산적 합리성의 기반—자연적·기술적·사회적 과정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지배적 경제질서에 의해 감추어졌던 생태기술적 잠재력을 만들어내도록 서로 짜여진—으로서 등장한다.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칙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전과 복원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경제를 녹색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 넓은 시각을 열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주의는 자연과 문화의 잠재력에 근거하여 지배적인 경제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생산적 합리성 건설을 향해 사회적 행위를 정향시켜주는 새로운 이론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 생태적 분배와 환경의 재전유

지속가능성의 경제학과 정치학 사이의 관계는 정치생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으며, 지속가능성의 그러한 생태적·사회적 조건들을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내부화하기 위한 개념 탐색을 가능케 하였다. 생태적

3) Enrique Leff, “La Dimensión Cultural del Manejo Integrado Sostenible y Sostenido de los Recursos Naturales,” in Enrique Leff and J. Carabias(eds.), *Cultura y Manej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Mexico: CIIH-UNAM/Miguel Angel Porrúa, 1993; Enrique Leff, *Green Production: Towards an Environmental Rational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5.

4) Enrique Leff, *Saber Ambiental: Sustentabilidad, Racionalidad, Complejidad, Poder*, Mexico: Siglo XXI/UNAM/PNUMA, 1998.

분배의 범주는 ‘분배갈등’에서 등장하는 환경적 외부성과 사회운동-생태적 비용에서의 불평등, 그리고 환경정의운동, 환경보호, 자연의 자본화에 대한 저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운동 속에서의 그 영향 등-을 지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환경갈등들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의 환경재와 서비스들은 시장 안에서 ‘거래’되지도, 해소되지도 않는다.

생태적 분배는 “인간의 환경자원 및 서비스 이용-자연자원의 고갈(생물다양성의 손실을 포함하는)과 오염부담-에 의한 사회적·공간적·시간적 불균형 또는 불평등”을 가리킨다.⁵⁾ 따라서 생태적 분배는 경제적 합리성을 정치경제학의 분야로 이동시키는 분배개념과 유사하게 생태경제학을 정치생태학에 접합(articulate)시키는 추가적인 경제과정(생태적·정치적)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범주와 함께, 한편으로는 생존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생태적 조건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괴와 오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생태적 분배는 자연이 가치평가되긴 하지만, 고용, 소득분배와 사회복지에 대한 경제적 수요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가치평가에 의해 봉쇄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물질적·상징적 이해관계(생존, 정체성, 자치와 삶의 질을 위해)를 움직이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킨다.

주류경제학은 자연재와 환경적 서비스에 재산권과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적 외부성을 내부화하고자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태경제학은 경제적 분배(부와 소득의)를 자연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수로 본다. 생태적 분배는 환경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의 배일을 벗기면서, 생태적 가치절하와 빈곤 속에서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지속시키는 특권적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이는 생태적·문화적 지배의 경제적 전략을 비난하는 비판적 개념으로서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분배라는 범주는 경제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환경은 경제

5) Juan Martínez-Alier, “Distributional Issues in Ecological Economics,” *Review of Social Economy*, LIII, 4, 1995.

과정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대안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력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생태적 분배는 생태경제학과 생태정치학, 또는 경제적 계산과 환경적 합리성 사이의 중간적 용어로서 등장한다. 이는 부유한 지배국가들에서 빈곤한 국가들로의 역사적인 생태적 부채-정치적 정복에서 불균등발전까지-를 설명하고 주장하는 논리를 제공한다. 현재 어떤 국가나 사회집단이 지리적 공간의 생물학적 생산을 초과하는 바이오매스를 전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들이 정화하거나 자신의 영토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 자연의 과다착취 또는 과다오염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들에게는 생태적 부채가 존재한다. 이는 불균등한 생태적 교환(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이 보다 평등한 생태적 비용분배 또는 환경정의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생태적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대신하여 생태적 과정을 무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파괴적 자연전유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의 자본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이러한 경제적·제도적·법적 질서 하에서의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의해 지향되는 부유한 사회의 생태주의와는 달리, ‘빈자의 생태주의’는 생존투쟁이자, 다양성, 정치성,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는 대안적인 사회적·생산적 프로젝트-지배적인 경제적·정치적 질서의 특징인 시장의 가치평가 및 협상규칙에 의해 확립된 거래와 보상에 반대하는-를 위한 투쟁이다.

500년간의 생태적 제국주의를 통해⁶⁾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온 생태적 부채는 경제를 생태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낮고 공정한 상업적 교환조건을 협상하고 그리고 환경정의운동에 의해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는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격차’를 만들

6) Alfred Crosby, *Ecological Imperi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어내었다. 오늘날 농민과 토착민 조직들은 자신들의 자연과 문화 자원이 라는 역사적 전승 재산을 되찾고 자율관리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보존하고 변형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새로운 길-기존의 경제적·생태적 질서와는 다른-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등장하고 있는 정치생태학 분야에서, 자연의 전유, 자주적 생산관리, 문화적 다양성, 민족적 정치성과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들은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담론들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영향, 생태적 비용, 부채 및 분배로부터 기인하는 제한적 시각을 뛰어넘어서 환경갈등이라는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생태학에 대한 상징적·조작적(operative) 가치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분배의 범주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기본적 근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분배개념의 사용, 그리고 외부성 분야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환경갈등을 경제학으로 내부화하는 목적을 충족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지도 않는다. 또한 불평등과 비지속가능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생태적 잠재력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하는 새로운 생산적 합리성의 건설에 기여하지 않는다.

3. 불가공약성, 차이,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가 생태경제학에서 불가공약성(incommensurability)의 원칙을 따른다면, 사회·환경적 과정들은 시장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 마르티네즈-알리에르가 언급한 대로, “‘생태적으로 교정된(corrected)’ 가격은 존재할지 몰라도 ‘생태적으로 올바른(correct)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⁷⁾ 외부성에 대한 가치평가를 조건지우는 생태적·문화적·사회적·제도적 요인들은 경제적 비용과 편익으로 옮겨질 수 없다. 미래의 선호를 실현시키는 할인율,

7) Juan Martínez-Alier, *op. cit.*

또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장기적인 생태적 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경제학에서의) 한계이론(marginalist theory)에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환경적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환경운동이 경제적 계산 속에서 생태적 비용을 표출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⁸⁾ 하지만 그러한 운동에 의해, 그리고 환경정의운동이라는 보완적 행위들을 통해 자본주의의 자연 전유에 사회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환경적 외부성의 실제 및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이전시킬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자원과 환경자산들을 싸게 판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동질적이고 일차원적인 경제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소득의 평등화와 좀더 공정한 생태적 분배를 통해 형평성과 다양성을 갖는 지속가능성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생태적·문화적 다양성의 잠재력, 그리고 차이의 정치를 통해 대안적인 생산적 합리성을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권력전략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자원의 재전유를 위한 사회·환경운동을 움직이는 권력전략은 물질적·사회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문화적·상징적 가치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시장메커니즘, 경제적 가치평가, 전통적인 정치협상을 통해 환경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환경정의는 문화적 권리의 방어, 그리고 자연의 생태적 잠재력의 재전유를 위한 사회적 동원에 추가적인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제적·생태적 합리성의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확립시킨다. 정치력, 그리고 이러한 환경가치들의 입법화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을 향해 새로운 사회행위자와 정치적 행동을 유도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집단적 권리의 수립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지배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가장(simulation), 흡수, 통제의 형태들에 의해 사람들의 환경인식이 쉽게 변질되고 타락되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8) Leff, 1995, *op. cit.*

이러한 맥락에서, 권능강화(empowerment)는 지배적인 지구질서 속에서 집중된 권력의 재분배가 아니다. 권력은 의지대로 주어지고 분배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차별화된 시각과 이해관계의 대치에서 비롯되는 힘의 관계이다. 차이는 이러한 복잡한 갈등 속에 있는 환경분야 속에서 차이와 차별화된 힘의 운동-니체가 문화, 철학, 과학이 지배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모든 형이상학적 문법체계에 반대하는⁹⁾의 ‘능동적인’ 부조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가 지구화된 세계를 직면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자연, 삶, 문화의 재전유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환경적 합리성은 존재의 차이(라캉), 존재의 존재론(레비나스), 그리고 다양한 인간본성을 규정하는 민족성에 의해 주도되는 대안적 발전 스타일의 적대적인 분야로서 차이의 정치를 수반한다.

모든 ‘생태적 분배’ 갈등 아래에는 대안적인 문화적 의미, 사회적 패러다임, 생산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전략이 내재하고 있다. 이는 지구화된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 조건과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곳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제적 보상과 참여 주장을 넘어서는, 환경운동을 이끄는 적대적 동력이다. 환경갈등이 규정되고, 공동시행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부채와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현재의 법률적 규칙과 관행에 의해 확립된 정치와 협상을 따르며, 지배적인 경제적·기술적 권력에 종속되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이 확립되어 있는 기존 질서이다.

불가공약성 이슈를 넘어서서, 환경갈등은 자연의 사회적 전유 속에서 물질적 힘과 상징적 과정, 그리고 생태적 주장과 문화적 의미의 차별화를 만들어낸다. 정치적 영역 속에서 민주주의, 자치, 자율관리를 위한 투쟁과 자연자원의 방어를 접합시키는 신사회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환경갈등은 물질적 과정, 사회적 이해관계, 문화적 의미가 서로 상이한 환경적 합리성들을 혼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적·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영역에서 발전

9) Jacque Derrida, *Márgenes de la Filosofía*, Madrid: Catedra, 1989, p.53.

한다. 여기서 생태적 목표는 멕시코와 남미의 농민과 토착민 운동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처럼, (역사적·문화적·정치적 전략 또는 전술적 이유에서) 문화적 자치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구에 종속될 수 있다.

생태적 분배의 범주는 발견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질과 이들의 복잡한 문화적·정치적 요구에 대해 경제가 만들어내는 환경갈등을 기술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이것들이 시장에서 표출될 때에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¹⁰⁾ 사회·환경적 갈등을 생태적 분배 이슈로 보게 되면, 집단적 정체성을 위한 시민운동의 ‘환경적’ 성격이 모호해지고 왜곡된다. 그러한 경우에, ‘생태적’ 분배문제 또는 사적·공동체적 환경전유 사이의 갈등은 경제적 협상으로도, 환경영향에 대한 기술적 평가기준—즉,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신사회운동은 자연자원이라는 유산을 재전유하고 생활방식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저항을 결합시키면서 등장하고 있다.

유추의 방법에 의해 경제학을 생태적 외부성으로 치환하는 생태적 분배 개념은 이론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불가공약성의 원칙을 엄밀하게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태적 분배 개념은 환경을 가치화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요인들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의 특수성, 생태적 안정성과 생산성의 조건, 자연에 부여된 문화적 의미, 외부성의 평가에 있어서의 권력전략, 자연자원과 생산과정의 전유를 위한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갖고 있는 것은 생태적 합리성을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재구축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대신, 이는 환경이 더이상 외부성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합리성을 위한 잠재력이 되는, 대안적인 경제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와 생태 사이의 불가공약성은 재산권, 소득분배와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확립하고 현재의 가치를 불확실한 미래의 우연성에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

10) 속담이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두꺼비는 일단 죽어 있어야 측정가능하다.”

속가능한 발전에서 불가공약성이 갖는 의미는 또한 생태적·기술적·문화적 과정으로 통합되어 있는 복잡계-물질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혼재하고, 다양한 합리성들이 자연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들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는-로서의 환경개념에서부터도 나온다.¹¹⁾

환경적 합리성 범주는 다양성과 불가공약성을 과학적·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부과되는 동질화시키는 지배질서에 도전하는 인식론적·정치적 원칙으로서 내부화한다. 환경분야에서의 불가공약성은 에너지와 생태적 변수를 시장단위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공통의 단위를 확립하는 것의 불가능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환경적 합리성 사이의 대치는 환경적 과정과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변환될 수도 없고, 자본으로서 재코드화될 수도 없는, 더욱 강력한 불가공약성 개념-공통점이 없는(irreducible) 패러다임들간의 적대¹²⁾-을 의미한다.¹³⁾

생태화된 경제의 비대칭성과 불평등을 통해, 환경위기는 대안적 생산 패러다임의 건설을 준비한다. 따라서 사회정의, 문화적 다양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는 환경적 합리성을 구성하는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은 자연의 가치설정에서 새로운 윤리적·물질적 원칙, 생산과정의 재전유를 위한 새로운 전략, 그리고 사회의 재조직을 이끄는 새로운 의미를 서로 조화롭게 혼합한다.

11) 라클라우와 무페가 “동등성의 논리는 단순화의 논리이며, 차이의 논리는 확장과 복잡성 증대의 논리”라고 단언한 것은 옳다(*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London: Verso, 1985, p.130).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터, 1990에서 재인용.

12)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5년.

13) Martin O'Connor, “On the Misadventures of Capitalist Nature,” *CNS*, 4, 3, 1993; Leff, 1998, *op. cit.*

4.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을 유도하는 환경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환경은 그 속에서 살면서 발전시켜온 서로 다른 문화들의 민족적 양식과 함께, 생태계의 안정성과 생산성의 조건에 기반한 생산체계로 나타난다. 생태적·기술적·문화적 과정들의 접합은 지속가능한 생태-기술적 생산과정을 창출하는 자연의 전유와 변형양식을 좌우한다.¹⁴⁾ 이 점에서 환경적 합리성은 모든 국가와 공동체에 전지구적 경제-생태질서의 법칙을 부과하는 하향식 계획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합리성의 건설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 그리고 서로 갈등하는 사회적 이해관계들에 의해 유도된다. 이는 자연의 재전유와 생산과정의 관리를 위한 권력관계 속에서 짜여진다.

플뿌리 수준은 환경주의의 원칙들이 이러한 새로운 생산적 합리성을 구축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생산성,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참여라는 측면 속에서 완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곳이다. 그 과정은 발전의 환경적 잠재력을 규정하는 문화적 의미의 형태와 함께 생물리적 과정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해준다. 지속가능한 이용가치의 생산이 근거하고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화코드들에 의해 규정되는 삶의 질에 대해 생산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양적인 표준화된 잣대는 없다.

지속가능한 생산은 물질과 에너지 흐름으로서, 그리고 양적인 노동가치 계산에 의해 고안될 수 없다. 환경적 합리성의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원은 열역학 법칙의 한계와 잠재성, 생태적 생산성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광합성을 통한 (-)엔트로피(negentropy)적 바이오매스 형성과 물질 및 에너지의 기술적 변형에 의해 생산과정에서 생산되는 엔트로피 사이의 균형에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생물자원과 환경서비스의 생산을 지속하는 생태계의 보전, 기술적 과정의 에너지 효율성, 자연자원의 문화적

14) Leff, 1995, *op. cit.*

가치평가에 내재하는 상징적 과정, 그리고 자연의 사회적 재전유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좌우하는 정치적 과정 등에 달려 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자연보전만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환경파괴와 생태적 잠재력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파괴는 빈곤의 악순환—이는 다시 생태적 파괴로 이어지는—을 가져온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승나선을 위해서는 환경비용의 보다 공정한—생태적·사회적—분배와 함께, 자연자원에 대한 사회적 참여 관리와 배출오염물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그러나 미래세대 존중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의 연대문제—자연자원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사회집단의 접근—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듯이, 자연의 사회적 재전유는 생태적 분배문제, 또는 환경파괴비용의 보다 공정한 분배, 그리고 회계에 있어서 환경자산에 대한 평가제고의 문제로서 포괄되어 내부화될 수 없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의 재전유에 있어서 형평성은 자연착취의 실제적 형태에 수반되어 있는 비용과 편익의 평가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 환경적 민주주의는 동등성의 정치에서 떠나면서,¹⁵⁾ 차이의 정치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발전한다. 이러한 정치는 비용의 측정가능성, 필요의 동질화, 자연에 대한 요구와 권리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정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하여 도전장을 던진다. 즉, 차별화된 문화적 의미와 적대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고, 자연의 재전유를 위한 투쟁과 대안적 전략 속에서 표출되는 정치인 것이다.

공동체의 실존조건은 자연자원 유산에 대한 공동체의 재산권 재확인에

15) “정의는 형평성, ‘공정한 경기’,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공헌과 비례하는 삶의 편익 공유에 대한 요구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빌리면, 정의는 동등성의 원칙 존중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정확...’하다. 머레이 북친의 *Remaking Society: Pathways to a Green Future*, Boston: South End Press, 1990, p.86을 보라.

의존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재규정하고 공동체의 생산과정을 재구축하는 자치이다. 환경적, 공동체적, 그리고 토착민의 권리의 등장과 정당화는 지배적인 법률체제에 의해 확립된 규범들을 변화시키면서, 사회적 요구를 표출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 존엄성, 자치, 민주주의, 참여, 자율관리를 위한 토착집단들의 투쟁 속의 주장들은 지배적인 생산양식과 정치체제로부터 나오는 편익분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자연의 재전유는 다양성 속의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제시한다.¹⁶⁾ 이는 공동체의 문화적 자치, 필요의 자율결정, 대안적 발전스타일을 경험하는 각 지역의 생태적 잠재력에 대한 자율관리를 수반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생산조건, 그리고 다양한 인구집단들의 생활양식을 규정한다. 재산권은 자연, 그리고 특유한 문화적·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대안적 자원이용관행을 전유하는 사회운동을 통해 규정된다.

형평성은 복지라는 표준적 패턴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는 이용가능한 자원 스톡과 전지구적 환경오염비용의 분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형평성은 사람들의 자치에 대한 어떠한 모든 장애물들을 전복시키고 철폐함으로써, 그리고 각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이해관계를 통해 각 지역의 생태적 잠재력을 전유하는 조건을 창출함으로써만 달성된다.

생태적 분배와 환경정의는 여전히 실재가 가치부여와 측정이 가능한 차별화된 존재론적 질서로 인식되는 근대적인 인식론적 렌즈를 갖고서 비취지고 있다. 이는 자연과 문화에 부여된 의미가 갖고 있는 비객관적 성격을 가리고 있다. 비본질주의적 정치생태학의 시각에서,¹⁷⁾ 자연의 사

16) G. Grünberg(ed.), *Articulación de la Diversidad. Pluralidad Étnica, Autonomías y Democratización en América Latina*, Quito: Ediciones Abya Yala, 1995.

17) Arturo Escobar, "After Nature: Steps to an Antiessential Political Ecology," *Current Anthropology*, 40, 1, 1999.

회적 전유는 논리적 모순과 존재론적 불가공약성을 뛰어넘는 차이의 정치를 주장한다. 이는 오히려 자연의 재전유 과정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정체성들의 헤게모니를 통해 지배적 사회질서를 전복시키는 사회갈등을 통해 급진적인 부정성(negativity)이 자본과 경제적 합리성의 전략에 직면하는, 대안적 패러다임들간의 투쟁이다.

이러한 환경적 합리성의 건설에 있어서 전략적인 질문은, 주변성과 외부성의 공간에서 야기되는 환경적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차이에서부터 동맹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잠재적 대안들의 타자성(alterity)으로부터, 다양한 합리성과 담론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연대를 조직하고, 지배적인 경제적 합리성에 반대할 수 있는 적대적 헤게모니를 확립하도록 접합시킬 수 있다.¹⁸⁾

따라서 환경운동은 본질주의와 주관주의 없이, 그리고 구조주의와 전체론의 선결정 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복잡화된 정체성들의 정치적 표출로서 인식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주체와 집단적 이해관계는 사실 자연과 문화의 자본화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생활방식과 사회적 정치성의 재구성을 지도하는 의미의 사실상 무제한적 구성으로 동원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지배-역사적 이해관계와 주관적 의미가 측정되고 코드화되고 통일되는 동질적인 공간으로서-는 거부되며 상이한 합리성이 구성된다.

5. 환경권과 자연의 사회적 재전유

보전주의, 생물중심주의, 관리주의의 시각을 넘어서, 환경주의는 차이, 다양성, 자치의 가치에 근거한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토착 및 농민 공동체의 투쟁은 새로운 문화적 권

18) Laclau and Mouffe, *op. cit.*

리를 자연에 대한 접근 및 전유 주장, 그리고 대안적 생산관행을 규정하는 밀바탕의 권력전략과 접합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 및 환경권은 생산조건과 생활양식에 대한 자율관리요구들을 통합해가고 있다. 이는 생존기반으로서, 그리고 내생적·자율결정적 발전과정을 창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연의 재전유 과정을 의미한다.¹⁹⁾

이러한 사고과정은 누가 자연을 소유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누가 지구상에 거주할 수 있는, 대지와 자연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배담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객관적인’ 시장법칙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최후 결정으로서 표출된다. 지구경제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모든 대륙의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환경적 합리성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권력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연의 전유는 생산수단(산업화된 자연의 생산력)의 통제뿐 아니라 생산의 자연적 수단과 조건에 대한 계급투쟁을 다시금 도입한다. 고삐가 풀려 있던 자연력이 기술에 의해 제어된다는 일차원적 시각에 의해 지도되는 생산수단의 전유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 환경주의는 지속가능한 자원이 용을 위한 대안적 전략을 지도하고 지지하는 생태적·기술적·문화적 잠재성에 기반하는 복잡한 생산과정으로서의 자연의 전유를 의미한다.

인구 대다수의 빈곤화와 주변화, 그리고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시장논리의 비효과성에 대응하여, 사회는 점차 생활조건과 생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운동은 점차 민주화되는 세계 속에

19) J. Moguel, C. Botey and L. Hernández, *Autonomía y Nuevos Sujetos Sociales en el Desarrollo Rural*, Mexico: Siglo XXI Editores, 1992; Enrique Leff, “Los Nuevos Actores Sociales del Ambientalismo en el Medio Rural,” en H. Carton de Grammont and H. Tejera(eds.), *La Sociedad Rural Frente al Nuevo Milenio. Vol. 4. Los Nuevos Actores Sociales y los Procesos Politicos en el Campo*, Mexico: UNAM/ INAH/ UAM/Plaza y Valdez Editores, 1996.

서 인권과 문화권을 위한 사회적 투쟁의 정당화와 함께 힘을 얻게 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새로운 인권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공유물(환경재와 환경서비스)의 보호를 통합해가고 있다. 민족적 장소, 토착언어, 문화적 관습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권리가, 자원의 집단적 통제, 생산과정의 자율관리와 생활양식의 자율결정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적·정치적·경제적 요구를 통합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재산권과 소유권 형태, 그리고 자연자원의 전유와 이용을 재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자연의 전유에 있어서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적 사례가 되고 있다. 생물자원의 유전물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초국적 생명공학기업들의 전략은 자연자원에 대한 열대지역 토착민들의 권리와 서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이 사안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생물다양성(수천 년에 걸친 민족생태의 공진화 결과)의 '실질' 경제적 가치를, 보전과 유전물질 생산에 투입된 자본과 노동시간으로서 또는 그 산물의 현 시장가치로, 아니면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에 의해 제기되는 딜레마는 지적 재산권을 통한 자본의 자연전유 대 생물학적 진화와 종의 문화적 선택, 그리고 자연자원의 경제적 이용의 결과 만들어진 자신들의 자연자원 유산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 간의 대결이다.²⁰⁾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존 우림 주민들은 '생산적 보전지구'의 자율관리를 위한 생산전략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로스 치말라파스 농민 생물다양성 보전지구의 확립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들이 자신들의 토지소유권의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해나가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자원 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토착 및 농민 공동체들이 세계화 과정에 편입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정치를 통

20) H. Hobbelink, "La Diversidad Biológica y la Biotecnología Agrícola," *Ecología Política*, 4, 1992; Juan Martínez-Alier, "The Merchandising of Biodiversity," *Etnoecológica*, 3, 1994.

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저항을 위한 중요한 투쟁과 발전의 재정향을 가져오고 있다.²¹⁾

따라서 사람과 공동체는 자신들의 민족-생태 발전 스타일을 새롭게 형성해가면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 담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 과정은 토착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생물다양성과, 그들의 미래의 삶의 기획들이 정의되는 장인 주거지의 재전유와 생산적 관리를 위한 전에 없던 운동을 야기하고 있다.

6. 자치, 자율관리와 민주주의

토착민과 농민의 빈곤타파와 삶의 질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은 자신들의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관리, 통제를 위한 조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참여적 자원관리원칙은 직접 및 실질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가면서 자치를 위한 투쟁을 관통하고 있다. 생산과정 속의 민주주의는 자연자원의 재전유, 그리고 공동체의 환경재와 서비스에 대한 집단관리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미 농촌지역의 몇몇 신사회운동들은 고용증대, 급여 개선 및 부의 분배개선 등을 위한 경제영역에서의 전통적인 주장들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의사결정과 제도화된 정당제도 속에서의 다원성과 참여증대,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다양성의 보호 등이 그것이다.²²⁾

새롭게 등장하는 농촌운동들은 경제적 착취, 정치적 주변화, 문화적 격

21) Arturo Escobar, "Cultural Politics and Biological Diversity: State, Capital and Social Movements in the Pacific Coast of Colombia," in O. Starn and R. Fox (eds.), *Culture and Social Protest: Between Resistance and Revolut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7.

22) G. Giménez, "Los Movimientos Sociales: Problemas Teórico-Metodológicos,"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LVI, 2, 1994.

리와 자연의 파괴를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통해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확립된 질서 속에서의 형평성과 참여 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질서 건설-토착민들의 정치적 차이, 민족적 정체성,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이들을 동등하게 포함하는 국가개혁-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²³⁾

민주주의를 위한 이러한 사회적 투쟁은 새로운 정치적 질서와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의 건설을 촉진한다. 환경주의자들의 씨앗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대중운동의 담론적·정치적 전략-토착민과 농민 공동체들의 문화적 권리와 정치적 자치, 그리고 이들의 문화적·생태적 생산수단의 재전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속에서 항상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전통적 자연자원 이용관행에 대한 재평가, 생활양식의 자율결정, 생산과정의 자율관리의 필요성을 표출하고 있다.²⁴⁾

이러한 시각에서, 생태와 문화의 근원에서부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의 자본화와 경제적 질서의 생태화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적 합리성의 건설은 생태적·문화적 다양성 원칙에 입각한 자연의 사회화와 공동체의 자원관리를 통해 성취된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와 형평성은 환경의 사회적 재전유를 지향하는 차이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허남혁 everyone@dreanwiz.com

23) P. González Casanova and M. Roitman(eds.), *Democracia y Estado Multiétnico en América Latina*, Mexico: La Jornada Ediciones/CIICH-UNAM, 1996; Leff, 1996, *op. cit.*

24)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Política Indigenista 1991-1995," *América Indígena*, 50, 1, 1990; H. Díaz Polanco, *Autonomía Regional. La Auto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Indios*, Mexico: Siglo XXI/UNAM, 1991; Moguel et al., *op. cit.*; R. Torres, *Entre lo Propio y lo Ajeno: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y Propiedad Intelectual*, Quito: COICA, 1997; M. Gomez(ed.), *Derecho Indígena*, Mexico: INI/AMNU, 1997.